

본 계약서는 열람, 계약체결, 법원제출 등의 용도 외 무단복제, 제 3 자에 대한 유출  
및 공개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함

# 가맹계약서

점



[주식회사 한비]

Ver\_20170401

주식회사 한비(이하 가맹본부)와 가맹점으로 계약하는 \_\_\_\_\_(이하 가맹점)은 본 계약을 통해 쌍방 간의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고 상호 협력 속에서 성장 발전하는 기준으로 가맹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제1장 총칙

### 제 1 조 [약관의 목적과 합의]

- (1) 본 약관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품 공급을 하며 가맹점은 이에 대한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에 관한 법률 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약관의 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유통시장의 큰 흐름이 변경 된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의 찬반 의사에 준해 자유로운 탈퇴할 수 있다.
- (3)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본 약관의 체결에 의하여 상품 공급 약정을 맺는 것에 합의 한다.
- (4)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품목 및 가격은 발주 프로그램이나 공지 및 기타 알리를 통해 알 수 있게 게시하며, 자유로운 구매를 보장한다.

### 제 2 조 [계약 당사자의 지위]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서, 상호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에 근거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이 가맹 계약을 체결 한다.
- (2) 가맹본부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가맹본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점포의 입회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은 특정 점포의 입회를 막을 수 없다.
- (3) 가맹점의 점포경영은 가맹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률 행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가맹점에게 귀속된다.
- (4) 가맹본부에게서 구입한 제품은 자유로이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제지할 권한을 가맹 본부가 가지지 아니한다. 단, 가맹본부가 제조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시장가격 준수 조건으로 공급받은 상품은 본부의 판매권장가를 준수한다.

### 제 3 조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이 가맹 계약에 따라 가맹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 4 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 본부는 계약서에 정한 의무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 한다.

- (1) 가맹 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2) 가맹점의 원활한 상품 공급을 위한 노력.
- (3) 가맹점의 판매지도 및 적절한 재고관리를 위한 노력.
- (4) 가맹점의 판매 전략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향상의 노력.

## **제 5 조 [가맹점의 준수 사항]**

- (1)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통일성 및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 (2)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은 누설하지 아니한다.
- (3) 가맹본부의 공동 구매 및 판매제품 구매에 적극적 협력을 다한다.
- (4) 가맹본부의 시스템과 상호와 로고 그 밖의 지적 자산이 보호되도록 하며, 본 약정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가맹점의 경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모방하여서는 안 된다.
- (5) 가맹본부의 임직원 및 그 밖의 대리인이 본 약관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의 매장과 그 부속시설을 출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 (6) 가맹점은 본 약관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계약한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타 브랜드의 가맹본부 업체와 본 약정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사전 통보하여 준회원으로서의 거래는 지속할 수 있다.
- (7) 가맹점은 주소, 상호 및 대표자 등 사업자 등록증에 관한 일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8)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주관하는 교육, 모임, 기타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단,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9)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주관하는 공동행사 및 가맹점 단체행동에 따라야 한다.
- (10)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상품 대금에 대하여 당일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 (11) 가맹점에 배정된 담당 유통관리사의 요청사항 및 본부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 점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자동 발주 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적극 업무 협조를 한다.

## **제 6 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지 아니한다.

- (1)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및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2) 가격구속, 거래상대방 구속,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 준수강제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3) 강제 구입, 경제적 이익제공 또는 비용 부담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강제 판매 목표 기타 불이익제공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제 7 조 [영업지역]

- (1) 가맹본부는 1 개 지역에 1 개소 가맹점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가맹점은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한다.
- (2) 전항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 (3) 가맹점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권은 가맹점에 있으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액은 가맹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 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의 책임임을 확실히 한다.
- (4) 본 약관 체결에 의하여 가맹점에게 가맹점의 점포가 소재하는 일정한 지역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 (5) 본 약관 체결에 따라 가맹점에게 부여된 권리는 체결 시 지정한 점포 1 개소로 한정되며, 가맹점이 점포를 추가 개설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 8 조[계약기간과 갱신]

-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초기 2 년간 의무 약정으로 하며, 이후 1 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만일 변경 된 규약이 있는 경우 상호간의 재계약 확인을 통해 연장하기로 한다.
- (2)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계약 갱신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그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다.
  - ①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가맹점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가맹본부가 제 2 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가맹본부가 제 3 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본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 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에게 천재지변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개점준비

### 제 9 조[가맹점 회비 납부]

- (1) 가맹점은 상품 공급에 대한 비용으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2) 가맹점은 전항의 회비를 매월 5 일을 정기 결제일로 정하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CMS 를 통하여 “을”의 은행계좌에서 가맹본부의 은행계좌로 이체 납부 한다.
- (3) 제 1 회의 비용은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 하며, 납부 완료 후 가맹본부는  
가맹점 상담과 점포 점검 등 용역 활동을 시작한다.
- (4) 고의로 납부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자동으로 가맹점 철회 과정을 통해 자동  
계약 해지의 경로로 처리한다
- (5) 2 항과 관련하여 1 회 연체 시 유선으로 통보하며, 2 회 이상 연체 시 서면통보 후  
가맹점 자동 계약해지의 절차를 밟는다.

### 제 10 조[장비의 구입]

가맹점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비의 구입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장비의 구입은  
가맹본부의 협력업체 또는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구입, 설치할 수 있다.

### 제 11 조[초도 물품의 주문 및 결제]

- (1) 가맹점은 점포 개점과 고객들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맹점 용도에 적합한 양의

초도 물품을 개점 전까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가맹본부에게 주문 하여야 한다. 다만, 초도 물품 중 가맹본부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2) 가맹점 개점 전 초도 물품의 납품가격은 가맹점에 공급 당시 납품가격 또는 개점 전 가맹본부가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시장 여건 또는 가맹본부의 사정에 따라 가격이 변동 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사전 통보하고 변동된 납품가격에 공급한다.
- (3) 초도 물품은 입고 전, 가맹점주와 상호 협의 후 최종 견적서를 제공하며, 가맹점주가 최종 확인 후 초도 물품에 대한 비용을 입금하며, 가맹본부는 입금 확인 후 공급을 시작한다.
- (4) 입고 후 변심에 의한 반품은 50%를 적용한다.
- (5) 초도 물품의 진열 지원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주가 직접 하며, 진열 지원을 희망할 경우 용역활동에 대한 비용을 납부한다.

#### **제 12 조[인 · 허가 관련사항]**

- (1) 가맹점설비 관련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담배, 주류 등의 제반 인 · 허가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가맹점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하거나 필요에 따라 갱신한 후 가맹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 1 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민 · 형사상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 **제 3 장 개점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

#### **제 13 조[전산관리비 및 상품공급, 배송, 영업방법 대금의 납입]**

- (1) 가맹점은 점포 운영에 필요한 POS 시스템 사용을 위해 제 9 조에 따라 가맹점 관리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2)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상품 공급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 ① 가맹본부가 제공한 발주시스템으로 가맹점이 발주일 (16)시까지 발주한 상품은 가맹본부가 발주일 다음 일(+1 일)에 상품을 공급한다. (16 시)이후의 발주 건은 차기 일로 변경하나, 상호 협의 하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토요일 주문 건은 월요일 배송에 합의하며, 명절기간 전 후에는 변경될 수 있다.
- (3) 성남이 아닌 근교 지역은 상호 협의 하에 배송 요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가맹본부의 운영상 이유로 배송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가맹점에 사전 통보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대대적 개편이 시행되면 통보와 아울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가맹점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5)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생산중단 상품, 제조사의 공급지연, 품귀, 규격 및 가격 변경 등을 선별하여 출고 혹은 취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양해함을 기본으로 한다.

Ver\_20170401

(6)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주문한 제품에 대하여 가맹본부 배송일정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지시를 하기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① 가맹점의 주문 오류에 의한 경우
- ② 가맹본부가 보유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
- ③ 외상 매출금 미결제에 의한 배송 중단 및 가맹점포 이외의 장소에 대리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제품 공급이 지연 되는 경우
- ⑤ 국제간 마찰로 인하여 수입제품이 지연 되는 경우
- ⑥ 통상적인 공급량을 초과한 수요로 인한 절품의 경우
- ⑦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협의한 경우
- ⑧ 기타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물품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 또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상품 배송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 ① 가맹본부는 상품을 가맹점의 점포까지 배송하며, 점포는 계약 시 지정한 가맹점 점포의 소재지 1 개소로 규정한다. 단, 양자간의 협의에 의해 가맹점포 외의 배송인 경우 별도의 배송 비용을 추가하여 진행한다.
- ② 가맹본부의 상품의 배송, 하역 중에는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상품배송 차량이 안전한 상태에서 상품 하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불법 주.정차 지역, 적재 장소의 위치가 가맹점의 층과 다르거나 혹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가맹점 점포 내부까지 적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상품의 배송은 가맹본부의 파렛트, 운반용 박스 등이 공급된 경우 보증금을 책정하여 별도 비용 요청을 할 수 있으나, 반환의 경우는 그 대금을 반환한다. 파렛트, 운반용 박스 등은 가맹본부의 자산이므로 배송 과정에 있어 가맹점의 귀책에 따른 파렛트, 운반용 박스 등의 파손, 훼손, 분실 등이 있는 경우 그 수리 또는 회복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 한다.

(8)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1 개월 이상 가맹점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약관계 유지의사를 확인 요구한 후 본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

#### **제 14 조 [상품의 매입]**

(1) 가맹점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거래선으로부터 판매할 상품을 매입할 수 있다.

- (2) 가맹점의 판단으로 가맹본부의 상품과 가격, 품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수 있고, 매입에 관하여서는 가맹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단,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은 자동발주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납품한 상품에 대하여 인수 시 수량 및 품질 등에 대해 검수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신이 발주한 상품에 대한 입고를 거부하거나 전산 조작의 미숙에 따른 발주 시스템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 (4)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 주 이상 가맹본부에게 상품을 발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약관계 유지 의사 확인을 요구한 후 본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 (5) 가맹본부와 서울우유협동조합 본사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가맹점은 서울우유를 가맹본부에서 받기로 계약이 된 경우 지역대리점에서 받을 수 없다. 가맹본부와 서울우유 지역 대리점 양쪽에서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발되거나 이를 계기로 문제가 되어 서울우유협동조합 본사에서 제제가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서울우유 공급 희망 여부 : ☐ 예 / ☐ 아니오 점주확인 : (인)

#### 제 15 조 [상품의 관리 및 반품]

- (1) 가맹점은 식품위생법 등 사업장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법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상품 및 매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상품 선도관리(유통기한, 진열기한 준수 등)를 통한 상품의 위생관리에 힘써야 한다.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 (2) 가맹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상 발생하는 상품의 손실을 부담한다.
  - ①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중 매입확정 전까지 유효기간 경과, 파손 혹은 변질된 상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확인 시 매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매입 확정 이후 하자가 발생한 상품이 있을 경우 객관적 증빙과 검증을 통해 반품 여부를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 ② 반품은 전월 매출액 대비 3%로 한정한다.
  - ③ 반품 시 적용단가는 반품 시점에 가맹본부가 공급한 가격을 적용한다.

#### 제 16 조[비밀유지 의무]

- (1)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가맹점은 가족 및 그 직원에 의한 전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3) 본 조 제 1 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 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 **제 17 조[경영지도]**

- (1)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요청으로 비용을 납부 받은 경우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유통관리사를 파견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맹점의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 ①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 명성 유지 여부 확인
  - ② 상품의 진열상태, 점포 내,외부 청결상태 체크 및 지도
  - ③ 상품의 선도관리, 재고관리, 유통기한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④ 신규 고객 창출 및 단골고객 확보를 통한 상품의 판매 촉진 활동 지도
  - ⑤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 (2)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효과적인 경영지도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요청하는 자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제 1 항 각호에 의한 경영상의 정당한 규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4) 가맹점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특별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5) 가맹점으로부터 특별 경영지도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를 가맹점에게 제시할 수 있다.
- (6)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결과 및 개선방안을 가맹점에게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제 18 조[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 (1) 가맹점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가맹점 운영지침 및 매뉴얼 등을 준수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2) 가맹점은 반드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개별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
- (3) 가맹본부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제품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이 위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 유통관리사를 통하여 상담을 하고 점포 개별단가를 설정할 수 있다.

### **제 19 조 [자동발주시스템 정의 및 적용범위]**

“자동발주시스템”이라 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호 연계된 ASP WEB POS 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매출데이터, 재고정보, 매입정보, 기타정보를 사용하여 제품별 적정재고에 맞는 수량을 추출하고 배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1) “자동발주시스템”은 가맹점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 (2) “자동발주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제품 판매에 대해 모두 POS 에 매출 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입 전표 또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만일 가맹점의 부주의로 인해 재고가 맞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시스템 작동이 어려운 경우에 상품 과다 입고 또는 미 입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본 시스템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운영한다.
- (3) “자동발주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일 판매된 상품에 대해 적정재고를 산출하고 그에 합당한 수량만큼 다음날 배송되는 시스템으로써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제품으로 관리 범위를 한정한다.

## **제3장 거래확인 및 정산 등**

### **제 20 조 [거래 확인 및 세무 신고]**

- (1) 양 당사자의 모든 거래사실은 발주 시스템에 의해 입력된 발주를 기본으로 하여 가맹본부는 익월 10 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2) 상품공급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가맹점은 매입 매출 자료를 각각 작성하여 거래사실 일체를 기일 내에 세무신고 하여야 한다.
- (3) 세무 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매출규모나 가맹점 관리 등급 및 신고방식에 의해 가맹본부가 지원할 수 있다.

### **제 21 조 [정산]**

- (1) 상품공급에 대한 정산은 납품 시 바로 현금지불 조건이며, 부득이한 경우 바로 계좌이체를 조건으로 한다.

**국민은행, 계좌번호 : 662001- 01 - 152934 예금주 : (주)한비**

- (2) 상품 공급 금액은 상품 검수 후 당일 지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 매니저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한다.

## **제 4 장 회원가입 및 탈퇴**

### **제 22 조 [회원가입 및 탈퇴]**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Ver\_20170401

- 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산(자기 파산 포함)신청 또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당일 매출 금액을 연속 미루는 행위로 인해 가맹본부의 업무 처리에 지연을 가져 오는 경우.
  - ③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 (2)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선,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직접 교부 등의 합리적 방법으로 해지의 의사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가맹본부 시스템의 경영노하우,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상품 공급사업에 중대한 장래를 초래한 경우.
  - ②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유선 통보를 하였는데도 2 개월 이상 회비가 미납된 경우
  - ④ 기타 거래관계가 종료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 (3) 가맹점의 본 약정 위반 등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상품 공급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 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서 출고 된 상품의 미 결제금이 있는 경우 상품 회수에 대해 우선권 행사의 권리를 제공한다..
- (4)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 된 경우 가맹점 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①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 ② "가맹점"은 "가맹본부"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가맹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가맹점"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 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한다.
  - ④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소모품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단, 상호 협의하여 반환 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
  - ⑤ "가맹점"은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 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5) "가맹점"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 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업에 따른 반품은 50%를 적용한다.

### **제 23 조 [불가항력 등에 의한 계약 해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에게 다음의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느 일방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약정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전쟁, 폭동, 지진, 화재, 홍수, 기타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2) 가맹점의 사업장 영업과 관련한 관계법령의 신설, 개폐, 민원, 소송, 정부 또는 관할관청의 규제 또는 불허가 등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3) 점포의 경영 상태에 비추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쌍방에 대해 불이익이 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쌍방이 상품 공급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제 24 조 [원상회복]**

가맹점은 본 약정에 따른 계약 종료 후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자료, 영업 기밀에 속하는 모든 정보, 서류, 용구 외 대여 받은 설비·집기·비품 등 일체의 설치물 또는 물품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설치물 또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리비용 또는 가맹본부의 장부상 잔존가액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 25 조 [손해배상]**

- (1)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중 어느 일방이 본 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 약정 해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발생시로부터 30 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 (2) 본 약정 기간 중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제 3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가맹점의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대리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 3 자가 입은 재산상 또는 신체 상 손해는 가맹점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 5 장 기 타**

### **제 26 조 [계약의 변경]**

본 약정의 각 조항의 내용이 사회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 계속되는 물가 변동에 따른 가격 체계의 변화 등에 의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공정

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상호 합의하여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27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정함이 없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라 양자 간 협의로 정한다. 만약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관할 법원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17 년    월    일

#### **가 맹 본 부**

대 표 이 사 : 박 민 호 (인)

사업자등록번호 : 129-86-83228

상 호 : 주식회사 한비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159(하대원동)

#### **가 맹 점**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Ver\_20170401

## 별첨 1

# 자동발주 시스템 운영 규칙

### 제 1 조[자동발주 시스템의 정의]

자동발주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호 연계된 ASP WEB POS 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매출 데이터, 재고정보, 매입정보, 기타정보를 사용하여 제품별 적정재고에 맞는 수량을 추출하고 배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1) "시스템"은 가맹점이 지정한 품목을 선정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 (2) "가맹점"은 "시스템"운영과 관련하여서 그 방법이나 시행규칙에 대해 "가맹본부"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 2 조[시스템의 관리범위]

- (1) 운영규칙 1 조 1 항에 따라 "가맹점"이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 및 작동한다.
  - (2) "가맹본부"에서 매입하는 상품만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다.
  - (3) 가맹점 가입 후 "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매니저를 파견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하며, 무상횟수는 최초 1 회로 한정한다.
  - (4) "시스템"은 전일 판매된 상품에 대해 적정재고를 산출하고 그에 합당한 수량만큼 다음날 배송되는 시스템으로써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제품으로 관리 범위를 한정한다.
  - (5) "가맹점"의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해 재고가 맞지 않아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시스템"에서 제외한다.
- 단. 가맹점이 재고를 맞추어 다시 "시스템"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니저가 일부 품목을 검수하여 "시스템"의 적용 유무를 판단한다.

### 제 3 조[시스템의 운영주체]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운영주체로써 "시스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가맹점"은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이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단. "가맹점"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중단할 수 있다.

### 제 4 조[시스템의 사용주체]

“시스템”의 사용주체는 “가맹점”으로써 점포의 원활한 운영과 합리적인 매입과정을 위해 사용한다.

단. “가맹점”이 시스템에 따른 제품 매입에 있어서 불만 사항이 있거나, 타 거래선에서 제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은 “시스템”에서 제외된다.

#### **제 5 조[시스템의 선택권]**

“시스템” 적용에 대한 선택권은 “가맹점”에게 있으며,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원활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 “시스템”이 운영됨에 있어서 “가맹점”이 품목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거래선에서 제품을 매입하거나, 같은 품목 중 일부 품목을 제외할 수 없다. 만일 그러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시스템” 운영을 중단한다.

#### **제 6 조[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재고조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가맹점은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공동 네트워크 구축(ASP POS 도입)
- (2) “가맹점”이 지정한 품목의 대한 적정재고 산출 및 전산 시스템에 입력
- (3) 판매 데이터 생성
- (4) 매입 데이터 생성
- (5) 재고유지 관리

제 6 조에 따라 1 항목부터 5 항목까지 단 하나라도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므로 “시스템”에 의한 발주도 중단된다.

#### **제 7 조[시스템 운영비용]**

“시스템”은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맹본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만일 “자동발주 시스템 운영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시스템 관리사항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 (1) 제 2 조 3 항에 의거 무상횟수 1 회를 넘어서면 이후 2 회차분부터 품목당 2 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본 운영 규칙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단. 운영 규칙 변경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공지,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 특약사항

본 특약사항은 상기 계약의 관련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일체 모든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전면 무효화 한다.

단, 특약을 체결하는 점포는 제품 발주 시 가맹본부의 직영매장으로 방문하여 제품을 직접 픽업해 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가맹본부는 준 가맹점 이상부터 제공하는 날개 발주, 픽업 작업을 특약을 체결하는 점포에게 서비스로 제공한다.

\_\_\_\_\_("특약점포")(은/는) 별첨 1의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불만도 없으며  
가맹본부가 안내한대로 계약과 관련하여 매니저의 활동일체, 지원일체, 배송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함을 인지하며 발주하였을 때 제품 피킹 서비스만을 받음을  
확약합니다.

2016 년                      2월                      1일

## 가 맹 본 부

대표이사: 박민호 (인)

사업자등록번호 : 129-86-83228

상 호 : 주식회사 한비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159(하대원동)

## 가 맹 점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소 :